

9.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년 2월 13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여성교육국장 조정선)

### □ 제안이유

- 2023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 민간위탁 계획 및 위탁운영 실적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퇴소 및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생활을 원활히 지원하고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23.4.1.~'26.3.31.) 민간위탁(재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자립생활실 이용현황(2018년~2022년)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아동양육시설	9	25	7	25	10	21	12	19	10	15
그룹홈	1	0	1	1	1	2	2	1	2	3
가정위탁	0	0	0	0	1	0	1	1	1	1
소계	10	25	8	26	12	23	15	21	13	19
연도별 합계	35		34		35		36		32	

※ 2018~2022 퇴거\* 현황(누계) 68명(남 22, 여 46) \*입주기간 만료 등

- 자립준비 교육, 자립체험 프로그램 이용현황(2018년~2022년)

구분	계	자립준비 교육	자립체험관 운영	비고
이용자 수(명)	580 (남286, 여294)	328 (남159, 여169)	252 (남127, 여125)	

####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며, 보호종료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기관인 만큼,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서도 대상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 종사자 역량강화, 체계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